



2017 / 2018 TAX UPDATE

MISSING OR INCORRECT W-2?

직장인들은 1월 31일까지 W-2를 고용주로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2월 중순까지 W-2를 받지 못했을 경우 IRS는 먼저 고용주를 연락해 W-2를 요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만약 2월 말까지 W-2를 받지 못한다면 납세자는 IRS (800-829-1040)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IRS가 고용주에게 편지를 보내 W-2를 발급할 것을 지시할 것입니다.

ITEMIZED DEDUCTION (SCH A) PHASEOUT FOR 2017

2017년 AGI(Adjusted Gross Income)가 한도금액 (부부 \$313,800, Single \$261,500)을 초과할 경우, 소득초과분의 3%와 공제금액 (Allowable Deduction)의 80% 중 작은 금액만큼 공제금액이 감소됩니다. 모기지 이자, 재산세, 기부금 등이 Itemized Deduction 항목에 해당됩니다.

MEDICAL EXPENSE DEDUCTIONS

IRS에서 인정한 의료비용이 납세자의 AGI 10% 이상일 때부터 의료비 공제가 적용됩니다. IRS에서 의료비로 인정하는 의료 항목들의 폭이 넓어졌으나, 의료용 마리화나는 의료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UALIFIED PLUG-IN ELECTRIC DRIVE VEHICLES CREDIT

2017년동안 New Plug-in Electric Drive Vehicle을 구입하신 경우, 최대 \$7,500까지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2,500 크레딧이 적용되며, 전기 자동차 배터리 용량 (Kilowatt-hours or kWh)에 따라서 크레딧이 증가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택스 크레딧이 아닌 최대 \$2,500까지 리베이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주정부에서 받은 리베이트는 연방 & 주정부에 과세소득(Taxable Income)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RESIDENTIAL ENERGY EFFICIENT PROPERTY CREDIT

태양열, 지열, 풍력을 이용하는 가정용 난방, 온열 시스템 등을 2017년 1월 1일 에서 2019년 12월 31일 사이에 설치했거나 또는 설치 할 예정인 경우, 지불된 모든 비용의 30%까지 세금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세제개혁안이 미 상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다만, 상·하원 각각 법안이 달라 앞으로 양원 협의회 조정 절차를 통해 단일안을 마련하고, 다시 한번 상·하원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공포됩니다. 이 편지가 나가는 시기에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현재 통과된 상·하원법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컬 소득세 공제 폐지와 주·로컬 재산세 공제 유지(\$10,000 제한)은 공통된 사항들로 2018년부터 시행이 예상됩니다.

| 수정사항 | 상원법안 | 하원법안 |
|----------------|--|--|
| 개인소득세율 (%) | 7 단계 10, 12, 22, 24, 32, 35, 38.5 % | 4 단계 12, 25, 35, 39.6 % |
| 항목별 공제 | 모기지 이자 공제한도 현행 \$1,000,000 유지 | 기존 보유 주택 공제한도 \$1,000,000유지, 신규 주택 구입자 공제 한도 \$500,000 |
| | 의료비 공제 유지 | 의료비 공제 폐지 |
| | 학자금 용자 이자 공제 유지 | 학자금 용자 이자 공제 폐지 |
| 자녀 세액공제 | 자녀 1인당 최대 \$2,000 | 자녀 1인당 최대 \$1,600 |
| 상속세 | 면세 한도 2배 확대 (개인 \$10,980,000) | 면세 한도 2배 확대, 2024년 완전 폐지 |
| 최저한세(AMT)폐지 | 유지 | 폐지 |
| 오바마케어 | 의무가입폐지 | 오바마케어 유지 |
| C-Corp법인세율 (%) | 2019년부터 20% | 2018년부터 20% |

TRUMP'S TAX REFORM

2017년 12월 19일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세제개혁법안이 통과되어 대통령의 서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서명을 하고 나면 2018년부터 새로운 세제가 적용됩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개인소득세율 구간이 현행 10, 15, 25, 28, 33, 35, 39.6% 에서 10, 12, 22, 24, 32, 35, 37% 로 낮춰집니다. 표준 공제액은 현행 \$6,350에서 개인일 경우 \$12,000 (부부일 경우 현행 \$12,700에서 \$24,000) 으로 증가됩니다. 인적공제(현행 \$4,050)는 폐지되었습니다.
- ◆ 항목별 공제 중 모기지 이자 공제 한도는 현행 \$1,000,000에서 \$750,000로 낮춰집니다. 신규 모기지융자에만 해당되고, 기존의 모기지 융자는 영향 없습니다. Home Equity Loan 공제는 폐지되었습니다.
- ◆ 의료비용이 납세자 AGI의 7.5% 이상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 ◆ 상속세 면세 한도가 개인 \$10,980,000 으로 2배 증가하였습니다.
- ◆ 주정부에 내는 소득세와 재산세 대한 공제는 합산해서 \$10,000로 축소되었습니다.
- ◆ 주정부에 2018년 1월 15일까지 예납하는 2017년 소득세와 2018년 4월 10일까지 (LA County 경우) 납부하시는 주정부 재산세를 2017년 연말까지 납부하시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 Child Tax Credit이 현행 \$1,000에서 \$2,000으로 증가되며 \$1,400까지 환불 가능합니다.
- ◆ 오바마케어 의무가입은 2019년부터 폐지됩니다.
- ◆ 법인세율이 현행 35%에서 21%로 낮춰집니다.
- ◆ 법인 최저한세(AMT)가 폐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연말 절세 계획 및 세무 감사 유의사항 >

납세자

AFFORDABLE CARE ACT- GET HEALTH CARE COVERAGE, OR PAY A PENALTY

2014년 1월 1일부터 전 국민의 의료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017년에는 연간 총 가계소득액의 2.5%와 어른 \$695 중 큰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CONTRIBUTION TO RETIREMENT SAVINGS

직장에서 제공하는 Retirement Savings Plan (401K, SEP 등)에 최대한 불입하시기 바랍니다. 불입한도액은 401(k)의 경우 \$18,000 (50세 이상 \$24,000)이고,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은 \$54,000 입니다. 2018년의 경우 401k는 불입 한도액은 \$18,500 (50세 이상 \$24,500)이며, SEP은 \$55,000 입니다.

RETIREMENT PLANS: TRADITIONAL IRA AND ROTH IRA

1인당 \$5,500 (50세 이상 \$6,500)까지 IRA계정에 불입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세금보고시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2018년 4월 17일까지 불입해야 합니다. Traditional IRA에서 Roth IRA로 전환이 가능하며 조정 소득(Conversion Income)의 제한은 없지만, 조정소득에 대한 세금 (그동안 Traditional IRA를 통해 받은 세금공제 혜택을 돌려주는 의미) 을 고려해야 합니다. 은퇴플랜 중 하나였던 myRA프로그램은 낮은 참여율로 폐지되었습니다.

DISTRIBUTION OF RETIREMENT ACCOUNT

59½ 세 이전에 IRA 계정에서 인출하는 경우, 인출금액의 10%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다른 은퇴계좌로 전환(Rollover)을 위해 인출한 금액을 60일 이내에 다른 계좌로 트랜스퍼하지 않을시에는 10% 세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만약 IRA 가입자가 인출금을 심각한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에 사용한 경우, 일생에 처음 집을 구입시 사용한 경우 또는 대학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10% 벌과금에서 면제됩니다.

GIFT TAX / ESTATE TAX EXCLUSION

2017년의 경우, 수증자 1인당 \$14,000 (2018년의 경우 \$15,000) 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14,000 을 초과하여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금액이 없더라도 Gift Tax Return 보고는 해야합니다. 2017년에는 누적 증여액 \$5,490,000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증여세 및 상속세는 연계되어 있으므로 증여를 결정하실 때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OREIGN-EARNED INCOME EXCLUSION

납세자가 해외에 거주하며 발생한 소득 (Foreign Earned Income)에 대해서 1인당 \$102,100, 부부일시 \$204,200까지 (2017년 기준) 해외근로소득 면제혜택이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위해선 과세 주거지(Tax Home)가 해외에 있어야 하고, 지난 12개월 중 외국 체류기간이 330일 이상(Physical Presence)이었거나 Bona Fide Residence 조건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납세자가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고, 1년동안 어느 한 시점이라도 모든 계좌의 합계액이 \$10,000을 초과했다면 개인 세금 보고서 해외계좌를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계좌에는 은행계좌, 증권계좌, 보험계좌, 연금계좌 또는 실질적인 관리권한(Signature Authority)을 가지고 있는 계좌들이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보고하지 않는 경우, \$1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100,000 혹은 계좌 최대 잔고의 50% 중 큰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2011년부터 모든 은행 계좌, 보유 주식 및 외국기업에 대한 지분(시가 기준)의 합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Form 8938 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 연말 기준 : 미국 거주시 부부 \$100,000/Single \$50,000, 외국 거주시 부부 \$400,000/Single \$200,000
- 연중 최대잔고: 미국 거주시 부부 \$150,000/Single \$75,000, 외국 거주시 부부 \$600,000/Single \$300,000

PRINCIPAL RESIDENCE

소유한 주택에 일정기간을 본인이 거주한 경우, 매각 이익금의 \$250,000 (Single), \$500,000 (부부)까지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

REINVESTED DIVIDENDS

재투자된 배당금은 처음 주식을 구입한 금액과 함께 원가에 포함되므로, 관련 기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CAPITAL GAIN (LONG-TERM)

투자 자산의 매각 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소유기간이 1년이 넘은 후에 매각하여 유리한 세율 (15%) 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율 15% 이하인 저소득 납세자에게는 0%). 한편, 소득세율 39.6% 을 적용받는 고소득 납세자에게는 최대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AGI에 따라 Net Investment Income Tax (3.8%)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매각차익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INVESTMENT INTEREST

투자 시 발생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투자 이익의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해당년도에 미사용된 이자는 다음 해로 이월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INSTALLMENT SALE

투자 자산 매매에 대한 대금을 분할 상환 (Owner Carry) 하면, 이익금을 상환기간 동안 나누어 보고할 수 있습니다 (주식 및 채권 등은 제외).

사업경영자

AUTOMOBILE EXPENSE

2017년도 표준 공제율은 Mile당 53.5¢로 적용됩니다. 만약 자동차를 개인목적 및 사업목적으로 혼용하신 경우,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신 비율만큼 경비가 처리되므로 사업용 Mileage 기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자택에서 사무실 왕복에 사용된 마일리지는 Commuting에 해당되므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BAD DEBT, CASUALTY AND THEFT LOSS

외상 매출금 중 회수 불가능한 금액, 도난 및 재난으로 인한 손실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SECTION 179 AND DEPRECIATION

2017년에는 \$2,030,000 미만의 장비 구입시 \$510,000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하고, 2018년에는 \$2,070,000 미만의 장비 구입시 \$520,000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새 장비 구입시 장비의 50%까지 Bonus Depreciation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2018년에는 새 장비의 40%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PENSION PLAN

기존의 은퇴연금 계정에 최대한 불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Pension Plan이 없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이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AFFORDABLE CARE ACT FOR BUSINESS

2017년에 풀타임 직원 수가 50명 이상인 회사는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직원 1인당 \$2,26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 달에 130시간 이상, 한 주에 30시간 이상 일할 경우 풀타임 직원으로 해당됩니다. 한편, 직원 수 25명 미만의 사업체가 직원을 위하여 건강 보험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5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의 급여 및 보험료에 따라서 혜택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NEW EMPLOYMENT CREDIT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직원 한명당 고용 후 60개월 동안 총 급여의 35%까지 주정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해당 구역으로 지정된 후에 고용되었거나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고용되어야 하고, 주당 평균 35시간 이상 근무하며 CA 최저임금의 150%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 전 6개월간 실업 상태이거나, 고용 전 12개월 이내에 전역한 군인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RESEARCH ACTIVITIES CREDIT

사업상 사용된 Research 비용이 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 최대 \$250,00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NCOME TAX AUDIT 유의사항

SOURCE OF LIVING EXPENSE

보고하신 소득보다 생활비 및 지출금액이 많은 경우, 자금 원천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SOURCE OF FUND

부동산 및 사업체 매입 시, Down Payment의 자금 원천에 대한 증빙 서류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BANK DEPOSIT

만약 은행 입금이 보고되는 소득보다 많은 경우, 해당 증빙 서류를 (Check Copy 등)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없는 입금은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CHARITABLE CONTRIBUTION

현금을 \$250 이상 교회 및 비영리단체에 기부하신 경우 현금 확인서를 받으시고, \$250 미만을 기부하신 경우에도 증빙서류를 (Canceled Check 등) 보관해야 합니다. \$5,000 이상의 현물을 기부하신 경우, 시세 감정 평가서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SEPARATE BANK ACCOUNT

모든 Business 수입은 Business 계좌에 입금되어야 하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Business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Check를 사용하여 Transfer 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RECORD KEEPING

Bank Statement, Canceled Check, 영수증을 포함한 모든 세금보고 자료는 세금보고일로부터 최소 4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각 시, 주거용 혹은 상업용 부동산 구입관련 서류 (Escrow Paper 등)를 해당 세금보고 후 4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CASH TRANSACTION

은행 거래 시 \$10,000 이상의 현금 입금이나 인출이 있는 경우, 은행에 의해 자동적으로 연방 국세청 (IRS)에 보고됩니다. \$3,000 이상 \$10,000 이하의 현금거래시, 은행에서 거래내역을 보관한 뒤 정부 요구 시 제출합니다. 현금 거래 보고를 의도적으로 피하기 위하여 \$10,000 이하로 분할 입출금한 의도가 보일 경우에도 IRS에 보고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Business 거래에서 연간 \$10,000 이상의 현금을 한명의 손님에게 받은 경우, 반드시 연방 국세청에 Form 8300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FOREIGN GIFT

2017년에 외국 개인으로부터 연간 \$100,000 이상, 혹은 외국 법인으로부터 \$15,671 이상 증여받은 경우, 반드시 연방 국세청에 Form 3520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FORM 1099 FILING REQUIREMENT

Form 1099 Filing Requirement이 강화되어 Due Date까지 보고하지 않거나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지 않은 경우, Form 한건당 \$30 ~ \$1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Form 1099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발행해야 하는 금액의 상당 부분을 벌금으로 지급하고, 정상적인 경비처리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AUDIT NOTICE

감사를 통보 받으시면, 즉시 저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감사와 관련하여 사업체 혹은 가정으로 감사관이 불시 방문하는 경우, 감사관의 신원과 방문사유를 확인하시고 질문에 응답하시기 전에 저희 사무실에 즉시 연락하십시오.

새해에도 평안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일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CHOI HONG LEE & KANG LLP

최홍원 이종을 김

W W W . C H L K C P A . C O M

LOS ANGELES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8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1700 F: (213) 365-1726

| | | | |
|--------------------------|----------------|---------------------|----------------|
| Ilsup (Tommy) Lee | : 213-639-6285 | Samantha Kang | : 213-550-2183 |
| Ik Su (Justin) Kang | : 213-639-6296 | Changkwon Moon | : 213-550-2184 |
| Soh Yun Kang Park | : 213-550-2182 | Janet S. Choe | : 213-427-9595 |
| Kyu J. Kim | : 213-550-1277 | Amy H. Lee | : 213-639-6295 |
| Jay Chung | : 213-365-1700 | Yun Hye Shim | : 213-550-2186 |
| Spencer S. Moon | : 213-365-1700 | Yuwon Shin | : 213-550-2238 |
| Jung Gil Choi (Inactive) | : 213-365-1700 | Baekje (Jay) Lim | : 213-481-5474 |
| Sung Ha Hong (Inactive) | : 213-365-1700 | Haley Ahn | : 213-481-5486 |
| | | Seongho (Chris) Kim | : 213-550-2091 |
| | | In Joo Moon | : 213-550-2185 |
| | | Hae Sun Cho | : 213-550-2090 |
| | | Jhee Sue Yang | : 213-365-1700 |

TORRANCE OFFICE

3820 DEL AMO BLVD., SUITE 220, TORRANCE, CA 90503 T: (310) 542-6373 F: (310) 370-5565

| | | | |
|--------------------------|------------------------|--------------|------------------------|
| Youngsun (Judy) Rufsvold | : 310-542-6373 ext.701 | Hong Won Suh | : 310-542-6373 ext.705 |
| | | Angela Kim | : 310-542-6373 ext.703 |
| | | Seo Won Choi | : 310-542-6373 ext.702 |